

도서관대회에서 채택 건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

◇편집자주

1969년 8월 27일부터 9월 20일 사이에 서울과 춘천, 청주 등 지역에서 개최된 전국도서관대회에 참석한 도서관인은 조국 근대화 시책을 추진하는데 도서관에 부과된 임무가 무엇인가를 연구 협의하고 아

울러 도서관계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를 토의한 결과 우리 나라의 도서관계가 발전하는데 있어 정부 관계 부처의 협조와 요망되는 시책에 대한 견의를 관계 요로에 건의한 바 관계 당국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왔기에 그 내용 전문을 게재하는 것이다.

1. 문교부에 도서관 행정 전담 부서의 설치 및 도서관 관할청의 일원화 요청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세계의 수 많은 국가에서는 중앙정부 기구내에 도서관국 또는 도서관과가 설치되어 있음에 비추어 우리 정부기구내에도 동종의 부서를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우리 나라 도서관계의 후진성을 극복하는데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이나,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경제적이며 효과적인 방안이 중앙관서에 도서관행정을 전담하는 도서관국 또는 도서관과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우리 도서관인은 확신하며 또한 현재 문교부와 지방자치단체로 분리, 관할되고 있는 공공도서관을 어느 한 곳으로 일원화시켜 관할함으로서 종합적인 안목으로 침체되어 있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회신 : 문교부에서 기구를 개편할 때에 고려할 것임.

2. 공공도서관의 사서직원 티·오 배정 요망

국가의 재정형편상 일반 공무원의 증원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거나 도서관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공공도서관에 배치하는 사서직원의 티·오를 조속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법이 공포된지 이미 6년이 지났으나 티·오 배정이 없어서 일선 공공도서관 운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아울러 우리 나라 사회교육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서직급이 없는 현행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조속히 개정하여 사서직급을 삽입하고 티·오를 배정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회신 : 상기 문제에 대하여는 1971년도에 고려할 것임.

3. 사서교사 티·오의 증배 요망

도서관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학교도서관에 배치하는 사서교사를 문교부는

1968년 2월 26일부로 32명을 전국 시·도 교육위원회에 배치한 바 있으나 이는 도서관법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학생수 1,200명 이하인 때에는 1인의 사서교사를, 학생수 1,200명 이상인 때에는 2인 이상의 사서교사를 두어야 한다는 법률이 정하는 최저 적정수에 너무나 미흡한 수의 배정입니다.

물론 법률이 최저 적정선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법규대로 티·오를 배정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나 예산상에서 애로가 많을 줄은 사료되거나 학교도서관이 새교육 실현의 중심 교육장임은 물론 학교 교육의 짐장을 깊이 배려 통찰하셔서 학교도서관의 운영에 핵심인 사서교사 티·오증원은 무엇보다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점을 깊이 이해 하셔서 관계 당국에서는 적극적이고 계속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소식 주시옵기 바랍니다.

회신 : 정부 공무원 정원 증원 억제 방침에 따라 현재는 어려운 설정임.

4. 국민학교 사서교사 자격기준 제정 요망

도서관법 제25조에 의하면 국민학교에도 도서관(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동법 제6조에 규정된 바에 의하면 도서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국민학교에는 1인 이상의 사서교사나 1인 이상의 사서의 직무를 담당할 교사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학교에 있어서 도서관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국민학교의 사서교사 확보문제는 진요한 바이니,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증 이상의 소지자만이 사서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현행법으로는 국민학교의 사서교사 확보가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교육공무원법 제3조 자격기준 별표 1의 사서교사 자격기준을 고쳐 사서교사의 자격기준을 1,2급으로 구분하여 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서교사(국민학교) 1급

(1) 국민학교 정교사(2급)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사서교사 양성 강습을 받은 자.

(2) 국민학교 사서교사(2급)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제교육을 받은 자.

※사서교사(국민학교) 2급

(1) 국민학교 준교사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사서교사 양성 강습을 받은 자.

(2) 대학 졸업자로서 재학중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

회신 : 국민학교 교사 자격증 소지자도 사서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 제3조 별표 1의 자격기준중 사서교사란의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5. 대학 도서관 직제 확립과 사서직의 티·오 문제

도서관법이 공포된지 이미 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를 제외한 전국 대학도서관에는 아직껏 적체가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점은 대학도서관의 기본적인 운영면에 있어서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더우기 사서직의 수적 부족으로 인하여 가장 기초적인 대학도서관의 기능마저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대학도서관의 육성 강화는 “연구하는 교수, 공부하는 학생”을 표방하고 있는 문교시책과 적절된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도서관인들의 숙원인 대학도서관의 직제 확립과 티·오 증배가 성취될 수 있도록 각별한 조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 없음

6. 사서직의 특수근무수당 지급 요망

사서직은 인류의 지식의 수집, 보존, 전달을 담당하여 문화의 발달과 사회 및 국가 발전에 필요한 모든 학술문화정보를 수집 정리하여, 기본적이고 제1차적인 자료를 생산 제공함으로써 민족문화 발전과 국가발전에 실질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가 그 자격을 인정하여 교사와 같은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전문직입니다.

특히 고도로 전문화되어 가는 학술문화와 산업 및 모든 분야에서 요구하는 광범하고 세분화된 지식정보의 제공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걸쳐 높은 지식을 가져야 하고 특정한 한 분야에 또한 전문성을 가져야 비로서 봉사에 임할 수 있는 특수직입니다.

더구나 1일 평균 근 12시간에 달하는 장시간을 서고 관리나 책의 몬지 등 비위생적인 환경속에서 무리한 노동을 하는 직종입니다. 이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유사한 타 직종과 같이 당연히 직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오며, 이 일을 위하여 정부 당국에서

국공립 공공대학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직원에게 특수 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예산에 반영함은 물론 공무원 계수당 지급 규정을 개정하여 주시도록 적극적인 조처 있으시기를 간구하는 바입니다.

회신 : 정부 재정 형편상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의 직원에게만 해결하고 71년도부터 각 도서관에 확대 실시할 예정으로 있음.

7. 도, 시, 구, 단위공 공도서관설치 요청

공공도서관은 민족문화의 진흥과 사회교육의 중심기관임은 물론 지역사회 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시설로서 선진 제국에서는 국가 및 사회 발전의 것줄이며 심장으로 인정되어 펜마크(국민 2,933명당 1개관) 노르웨이(국민 1,961명당 1개관) 등 국가에서는 국민 2,000—3,000명당 공공 도서관 1개관인 풀로 보급 발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대적인 도서관문화가 도입된 이래 지난 1967년 정부가 획기적인 용단을 내려 공공도서관 설치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설치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 지난 2년간 이 계획에 의한 국고 부담의 설립이나 혹은 일부 또는 보조로 설치된 공공도서관수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9개도 32개시 139군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전역의 공공도서관 설치율은 도립이 11% 시립이 68.75% 군립이 15%로서 3도 10시 118군이 아직도 1개의 공공도서관을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인 바, 국민 약 192,000명에 1개관에 불과한 부끄러운 상태입니다.

우리나라가 근대화의 작업에 충력을 경주하고 있어서 학술문화정보의 보다 빠르고 정확한 제공을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하고 있고, 특히 과학기술의 개발 및 발전을 위해 요청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는 국도로 발전되어 가는 이 분야의 진보에 따라 더욱 시급을 요하는 것이고, 지역차와 도시와 농촌간의 균형 있는 문화 발전과 사회교육 및 과학기술 정보 제공의 정보 차원체로서 기본적이고 가장 착실한 한 시설을 보급 육성한다는 신념으로서 보다 더 과감한 시책으로서 도·시·구·군 단위의 공공도서관 설치를 위해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과 적극적인 조처를 시급히 강구하여 주실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회신 : 없음

8. 전국 대학에 도서관학 강좌 설치 요망

조사 및 연구 활동을 기간으로 삼는 대학교육에 있어서 학생들이 인류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한 각종 도서관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필수의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우

(4면에 계속)

圖書館職員 T/O. 직원의 T/O는 도서관의 규모에 따라 可變的이다. 그러나, 前項의 시설을 갖춘다고 하면 최소한 다음의 人員이 필요하다.

(1) 館長(次官級 또는 1級) ³⁾	1人
(2) 司書官	1
(3) 司書官補	2
(4) 行政事務官	1
(5) 司書	2
(6) 司書書記	6
(7) 技能職(打字手, 火夫, 電工, 守衛 등)	7
계 20人	

(23페이지에서 계속)

리 나라의 대학생들은 도서 및 도서관 이용 방법에 미숙하여 그것을 이용하여 자학자습하는 습관을 길들이지 못한 관계로 보다 광범하고 깊고 정밀하게 학문을 탐구해야 하는 대학 사회에서까지 학생들이 교수의 강의에만 의존하는 실정인 바 이를 시정하여 보다 더 바람직한 대학교육의 교육방법을 시행하고 대학 교육의 정상을 기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외국의 선례를 빼아서 전국의 각종 대학(교)에 도서관학을 최소한 1학점 이상을 교양과목으로 설치하도록 조처 있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회신 : 대학교육 과정에 도서관학 강좌를 설치하는 문제의 타당 여부는 연구 검토될 문제이므로 대학교육 연구회에 연구 검토하도록 조치할 것임.

9. 학교 도서관 교육 행정을 담당할 장학체계의 확립
도서관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이미 설치되었거나 장차 설립될 학교도서관을 지도 육성하고 교육과정과 연관된 운영으로 학교 교육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봉사가 이루어 지도록 장학지도가 요청되는 바 이를 위하여 시·도교육위원회에 학교도서관을 담당할 장학사(전문 교육을 이수하고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배정하여 장학 체계를 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 예산상 증원이 확정되는 대로 배정코자 함.

10. 한국서지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 증액 요망

(7페이지에서 계속)

더한 실패가 발생하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데 대한 조사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하여 열리게 될 지방적인 조사로서 원인을 파악한 후 도서관기관에 의한 그러한 실패가 있을 경우에는 국무장관은 명령으로서 실패에 대한 것을 선언하고, 그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결합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 및 기관을 명

建立委員會의 組織. 도서관 전립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와대 내에 잠정적인 委員會를 조직할 필요가 있으며, 그 任務와 構成은 다음과 같다.

(1) 任務 : 본 위원회는 도서관 규모의 결정, 전립의設計, 전립 資金의 조달, 자료의 수집, 내부시설에 대한 자문, 도서관 正式名稱의 결정 등 임무를 맡는다.

(2) 構成 : 委員長은 대통령 秘書室長이 되고, 圖書館 專門職, ⁴⁾ 建築專門家, 實業界人士 등이 委員이 된다.

3) 圖書館長은 이른바 權勢가 약한 포지션이므로 職級을 높여서 우대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資格은 史學의 主題背景을 가진 圖書館 專門職이면 理想적이다.

4) 圖書館 專門職은 館長으로서 任命할 사람을 人選하여, 그에게 幹事役을 맡기도록 한다.

국내에서 간행된 각종 자료를 주제별로 조사 평가하고 서지목록을 작성하여 기술자, 연구자 및 모든 분야의 학자나 교육가에게 제공함으로서 연구기간을 단축시킬은 물론 연구하는데 있어서 자료 수집에 소요되는 노력과 막대한 경비를 절약케 함으로써 신속하고 충실히 연구들이 생산되어 우리 나라의 학술 진흥과 기술 향상에 공헌하고 근대화 과업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한 국서지작업을 수행해 나가기 위한 국고보조가 빈약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국고 보조의 증액을 바랍니다.

회신 : 없음

11. 국가적인 규모에서 학교도서관 발전을 위한 법의 정비 및 종합 계획의 수립 실시 요망

현행 도서관법 제25조에는 각급학교에 도서관(실)을 설치하게 되어 있으나 많은 학교에서는 이를 시행치 않고 있으므로 인하여 학교도서관의 발전이 미진한 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정부당국에서는 각급학교에 대하여 법시행을 촉구하여 주실 것과 강력한 법을 제정토록 조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국가적으로 지원하여 학교도서관이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 없음

령으로서 명시하여 제시할 수 있다.

(2)~(5)항 생략.

제11조 직원, 재산 및 부채의 이관에 대한 보충적인 규정——생략.

제12조~제26조 생략.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국의 공공도서관법에는 몇 가지의 뚜렷한 특징과 장점을 볼 수 있다. (차호에 계속)